

海岸保全地區의 유지관리

부 칙

「을」의 협정은 당해도로의 공용개시일부터 효력을 발하며 노선을 폐지한 경우 또는 호안의 공용을 폐지한 경우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상의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 「갑」「을」명기 날인하여 각각 1통씩을 갖는다.

年 月 日

協定者

甲 海岸管理者

○○縣知事(또는 ○○市町村長) ○○○○ 인

乙 道路管理者 ○○縣(또는 ○○市町村)

○○縣知事(또는 ○○市町村長) ○○○○ 인

添附圖面

詳細平面圖

標準斷面圖

주 ②

겸용 공작물 관리협정서(예)
(어항관리자 간)
해안관리자 ○○현지사(또는 ○○시정촌장) ○○○○
(이하 「갑」이라 한다)와 어항
관리자 ○○현(또는 ○○시정
촌)의 장 ○○현지사(또는 ○○
시정촌장) ○○○○ (이하
「을」이라 한다.)은 ○○어항
해안 보전구역내의 호안일부
와 겸용하는 어항임항도로(○○,
○○선) (이하 도로라 한
다.)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인정, 본협
정을 체결한다.

「이하 예~도로관리자 간,
제1조~제10조 동일」

부 칙

이 협정은 「을」이 도로에 관
한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도로의 효
력을 폐지한 경우 또는 호안
의 공용을 폐지한 경우는 효
력을 상실한다.

이상의 협정을 증명한 이 협
정서 2통을 작성, 「갑」「을」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을 갖
는다.

年 月 日

甲 海岸管理者

○○縣知事(또는 ○○市町
村長) ○○○○ 인

乙 漁港管理者 ○○縣(또는
○○市町村長)

○○縣知事(또는 ○○市町
村長) ○○○○ 인

添附圖面

• •

해안 호안 전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어항 시설 용지 등의 어항시설과 외부와의
출입로(도로)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안 호안의 일부를 제외한 경우도
명확한 목적의 사용에 해당한다.

詳細平面圖

標準斷面圖

주 ③

각서

○○현지사 (또는 ○○시정 촌장) (해안관리자) 와 (○○ 현 또는 ○○시정촌) (도로·어항관리자) 의 장과 체결한 ○○어항해안보전구역내의 호안에 관한 겸용공작물 관리 협정의 실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기(記)

1. 도로(어항) 관리자는 겸용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보강함과 동시에 마모 및 손상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콘크리트로 바꾸거나 아스팔트로 더욱 보강하는 등 항상 해안보전상 지장이 없도록 양호한 상태로 유지 수선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2. 1항에 있어서 해안관리

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年 月 日

海岸管理者

○○縣知事(또는 ○○市町 村長) ○○○○ 인

道路(漁港) 管理者 ○○縣(또는 ○○市町村)

○○縣知事(또는 ○○市町 村長) ○○○○ 인

③ 해안 호안 파반공(波返工)의 일부를 제거한 어항시설(어항시설용지를 포함)과 외부와의 출입로(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해안호안전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어항시설용지 등의 어항시설과 외부와의 출입로(도로)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안호안의 일부를 제외한 경우도 명확한 목적의 사용에 해당한다.

(2) 시설의 처분

해안호안의 전면이 매립되

어항시설용지 등의 어항시설이 설치, 조성됨으로써 해안보전시설로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는 어항시설의 이용상 해안호안의 상부를 철거하고 호안부를 어항시설용지의 일부로서 이용하는 일이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처분에 있어서 적정화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당해 시설의 부지인 공공공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상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고 보통재산으로서 대장성에 인계하는 등의 절차(전면이 매립됨으로써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인계가 부적합한 재산으로 된다.)가 필요하다. ❶